

상리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상리요양원 운영규정 2장 9조

1.계약목적

(1)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하며 계약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①계약당사자
- ②계약기간
- ③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 ④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된다.

- ①장기요양 인전등급 변경시
 - ②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6)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구분		금액(원/%)	내역
장 기 요 양 보 험 급 여 항 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재가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재가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재가15%)	노인장기요양법의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12%, 8% 부담
비급여 항 목	식사재료비	3,500원	3,500원 3식 = 10,500원
	간식	1,500원	1일 2식 기준 = 1,500원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30,000원 2인실-3,000원	1인실 30,000원/일 2인실 3,000원/일
	이미용료	무료	

상리요양원 운영규정 2장 10조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입소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입소자의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⑨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⑩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⑪입소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
- ⑫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⑥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상리요양원 운영규정 2장 11조

1.계약해제

- (1)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⑦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⑧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⑨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⑩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